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137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따른 총허용어 획량 배분량의 할당 및 관리	3
2. 부칙	10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제출
2. 제 출 일 : 2024. 6. 28.
3. 회 부 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 의무와 해당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의안번호 제1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할당 및 관리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총허용어획량(TAC)제도에 따라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배분량)을 할당함에 있어 동 법안과 함께 제출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1)에 따라 보고받은 어획·전재·양륙 실적’과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를 고려하도록 하고(안 제37조),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38조), 위 어획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7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① (생략)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① (현행과 같음)			
②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배분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 동 개정안은 동 개정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의안번호 제25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3년간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어획실적이 없는 어업자·어선에 대하여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8조(배분량의 관리) ① ~ ③ (생 략)

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포획·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 보고 절차 등

고려하여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이 없는 어업자·어선에 대해서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2.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양륙실적
3.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배분량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른 양륙실적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및 포획·채취의 정지 --

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하고 총허용어획량에 대하여 어종별, 업종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로 허용어획량(이하 ‘배분량’이라 함)을 결정할 수 있으며, 배분량은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²⁾의 운영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어업자별·어선별로 배분량을 할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어획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2) 우리나라는 '99년 4개 어종에 TAC 도입 후 2024년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 중이며 전체 연근해어획량 대비 약 40%를 TAC로 관리 중임.

▶ TAC 제도 현황은 참고자료1 참조

[TAC 운영 근거]

구분	내용
제36조 (총허용어획량 설정)	▶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 설정(총허용어획량계획 수립) ▶ 시·도지사: 지역의 어업특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자원 외 수산자원에 대한 총허용어획량 설정(총허용어획량계획 수립)
제37조 (총허용어획량 할당)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한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배분량) 결정 ※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 할당 가능, 과거 3년간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어획실적이 없는 어업자·어선에 대한 할당 제외 가능
제38조 (배분량 관리)	▶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 배분량을 초과 어획 금지 및 어획량 보고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 대한 일정 기간(6개월 이내) 포획·채취 정지 등 조치

□ 현재 국내 TAC는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 중이고, 해양수산부는 TAC를 2028년까지 전체 어종·업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임.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³⁾은 연근해어업자 등에게 조업일마다 조업시간·조업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3)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제9조(어획실적 및 전제실적의 보고 등) ①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을 할 때 해당 조업일마다 어획실적과 전제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획실적과 전제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등에 관한 어획실적과 수산물 전재(轉載) 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동 제정안이 의결될 경우 TAC 운영을 위한 정확한 어획량 산출, 수산자원량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어업자별·어선별 배분량 할당의 주요기준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⁴⁾에 따라 보고한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포함하고⁵⁾,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어획량 등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법상 어획량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 법에 따른 TAC 적용대상에 대한 어획량의 보고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보고를 일치시키고, 총허용어획량 배분 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파악한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감안하도록 하여 할당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며, 보고의무

4) 동 개정안은 동 개정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의안번호 제 25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5) 기존 시행령에 배분량 할당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던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의 위반 전력, 업종별수협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의 의견은 하위 법령 마련 시 포함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위반 시 중복 제재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짐.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법	개정안
어획량 배분 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시행령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의 위반 전력 -과거 <u>어획실적</u> 및 어선의 톤수 등 어획능력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의 의견 -<u>수산자원의 상태</u>	▶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u>어획실적</u>과 전제실적 ▶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양륙실적 ▶ <u>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u>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어획량 등 보고	▶ 어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보고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전제·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제재처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삭제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상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규정에 따름.

□ 다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은 어획·전제·양륙 실적 보고의무의 적용 대상을 정치망어업·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한시어업 등의 허가나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마을어업권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이 법에 따른 TAC 적용 대상에는 마을어업권자⁶⁾도 포함되어 있어,

6) 현재 마을어업 중 TAC 적용대상은 ‘제주소라’이며 TAC 적용대상은 해양수산부고시인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통해 결정됨.
▶ 해당 시행계획은 참고자료 2 참조

개정안과 같이 TAC 운영을 위한 어획량 보고, 제재 처분 등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르도록 할 경우 마을어업권자 규제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현행법 및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상 TAC 적용 대상 비교]

적용대상	현행	제정안
면허어업	정치망어업(제7조제1항제1호) 마을어업(제7조제1항제2호)	정치망어업 <미포함>
허가어업	근해어업(제40조제1항제1항) 연안어업(제40조제2항) 구획어업(제40조제3항) 한시어업(제43조제1항)	좌동

2. 부칙

가. 개정안의 개요

- 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개정안의 시행일을 정하고, 배분량 할당 시 고려해야 할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적용 시의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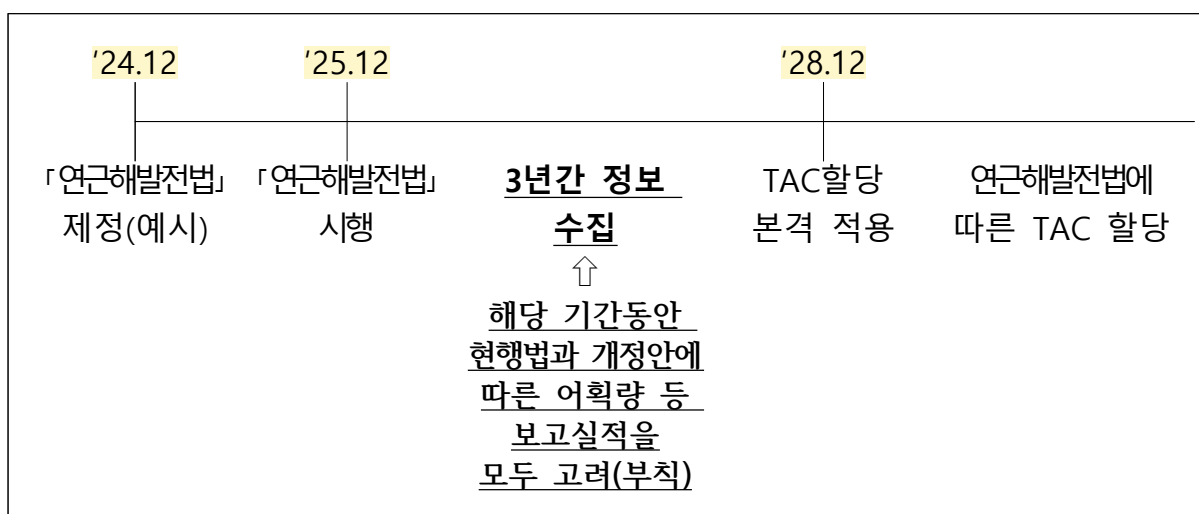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분량 할당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하거나 제외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제38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어획량 실적과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된 어획실적·전재실적 및 양륙실적을 모두 고려하여 그 배분량을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안 제37조제2항은 배분량 할당 시 ①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과 전제실적, ②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보고한 양륙실적, ③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④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부칙 제2조는 해당 조문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보고된 어획량 실적과 개정규정에 따른 어획·양륙·전제실적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인데, 이는 개정안에 따른 TAC가 최근 3년치 어획실적·전제실적·양륙실적 등을 바탕으로 배분량을 할당하므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 후 3년간 어획·전제·양륙실적 보고를 통해 어획실적 등에 대한 정보축적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 및 TAC 전면적용 순서도]



문 의 처
02)6788-5422

자료1

우리나라 TAC제도

□ 제도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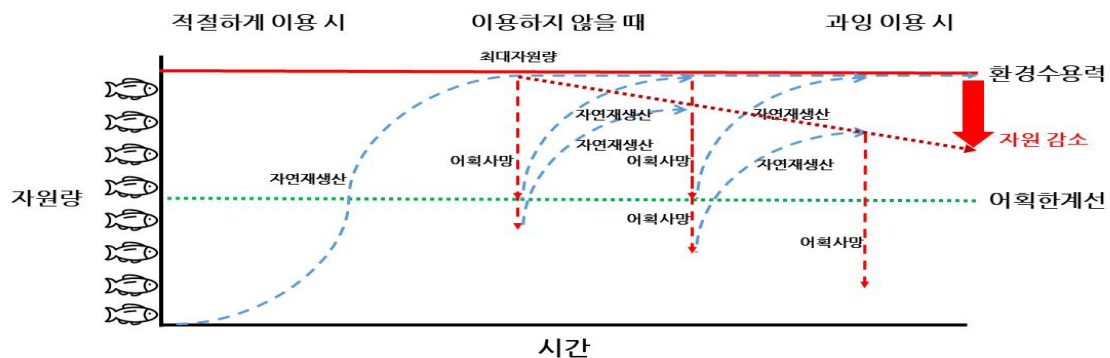
- (수산자원의 특징) 수산자원은 자원 재생산성*을 가진 자원

* 가입(부화)→ 성장→ 산란→ 사망의 Cycle을 통해 자원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며, 어미 물고기 1마리가 수천~수십만개의 알을 산란하므로 산란할 수 있는 자원량을 지킨다면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

- (목적) 수산자원의 자원 재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산란을 위한 어미 물고기 등 일정 수준의 자원량을 보존하기 위함

- 또한, 어획 가능한 양이 확정됨에 따라 어업인들이 상품성 높은 대형 물고기만 어획하게 되므로 소형어의 보호에도 기여

<수산자원 이용과 자원량의 관계>



□ 제도의 근거

- (국제) 「UN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연안국이 EEZ 내 수산자원의 허용어획량을 설정하여 보존·관리하도록 명시

[참고] 제61조 '생물자원 보존'

제1항: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한다.

제2항: 연안국은 자국이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고려하여 남획으로 인하여 EEZ에서 생물자원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존관리조치를 통하여 보장한다.

- (국내)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40조, 「EEZ 어업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TAC* 설정·관리 등에 대해 국내법의 근거를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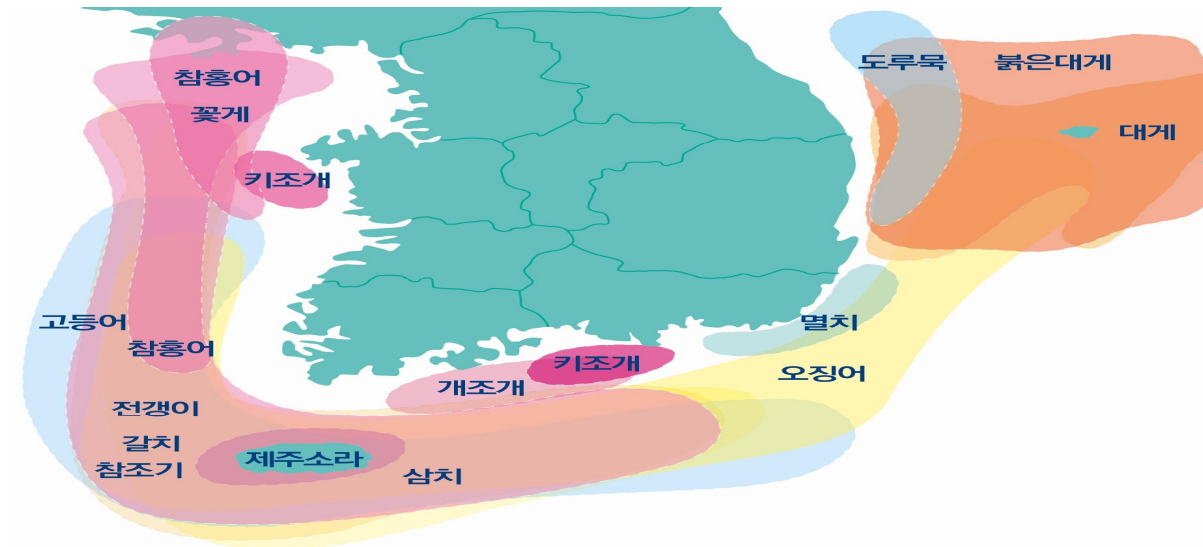
* TAC(총허용어획량) : Total Allowable Catch

** 법 외 행정규칙, 지침 등을 통해 TAC 시행계획, 판매장소 지정 등 세부사항 운용

□ 제도의 현황

- '99년 4개 어종에 TAC 도입 후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
중이며 전체 연근해어획량 대비 약 40%를 TAC로 관리 중

국내 TAC 현황



구분	도입('99)	현재('23)
• 업종	2개 대형선망, 근해통발	17개 대형선망 대형트롤 대형쌍말이 대형외말이 동해구트롤 동해구외말이 서남구쌍말이 근해통발 근해지망 근해채낚기 근해연승 근해인망망 연안찌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잠수기 마늘어업
• 어종	4개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15개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제주소라, 개조개,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참홍어, 바지락, 갈치, 참조기, 삼치
• 관리비율	16%	40%

자료2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별 표]

총허용어획량 계획 (제2조 관련)

< 적용 대상 어종: 15종 >

1. 해양수산부장관 관리 대상어종

(단위: 톤)

대상어업	대상어종	대상수역	총허용어획량 (TAC)	비 고
계			420,220	
대형선망	고등어	근해	126,072	망치고등어 제외
대형선망	전갱이	근해	41,693	가라지 포함
근해통발	붉은대게	동해 근해	25,587	
잠수기	키조개	인천·경기·충남·전북 ·전남·경남 연근해	8,416	
근해자망, 근해통발	대게	동해 연안 및 한일중간수역	978	
연·근해자망, 연안통발	꽃게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	7,059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근해자망	오징어	연근해	79,000	살오징어만 해당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	도루묵	동해 연근해	2,301	
근해연승, 근해안강망, 대형저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대형트롤	갈치	연근해	48,296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참조기	연근해	49,897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	삼치	연근해	27,253	
근해연승, 근해자망, 연안복합(전남, 인천)	참홍어	서해 연근해	3,668	

- 주) ① 대상 세부어종은 고등어(망치고등어 제외), 전갱이(가라지 포함), 오징어(살오징어만 해당)
 ②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5,000톤은 유보
 ③ 「수산자원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할당받은 어종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 어획량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음

2. 시·도지사 관리 대상어종

(단위: 톤)

대상어업	대상어종	대상수역	총허용어획량 (TAC)	비 고
계			6,845	
잠수기	개조개	부산·전남·경남 연근해	1,039	
잠수기	바지락	경남 연근해	4,034	
마을어업	제주소라	제주 연안	1,772	

주) ① 자자체 관리대상종의 TAC 설정값 등은 정부 권고안으로 최종값은 해당 시·도에서 확정 예정

< 시범 대상 어종: 3종 >

대상어업	대상어종	대상수역	총허용어획량 (TAC)	비 고
계			126,899	
기선권현망	멸치	연근해	117,504	시범 운영
서남해구쌍끌이중형 저인망	갈치	연근해	3,902	시범 운영
서남해구쌍끌이중형 저인망	살오징어	연근해	2,075	시범 운영
근해채낚기	갈치	연근해	3,418	시범 운영